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17 선고 2022가단1097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현완

피 고 1.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호, 편세린

2.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김성은, 문훈성, 박지수, 오소망, 황익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74,204,700원, 원고 B에게 132,600,000원, 원고 C에게 26,300,000원, 원고 D에게 26,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7. 5.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5.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F은 피고 E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2. 5. 6. 접수 제37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① 피고 E은 원고 A에게 184,204,700원, 원고 B에게 132,600,000원, 원고 C에게 26,300,000원,
원고 D에게 26,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주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2022. 5.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F은 피고 E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22. 5. 6.
접수 제37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6. 체결된 증여계약을 222,401,159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F은 원고들에게 222,401,1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차용금이나 이자 등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A으로부터 231,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150,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30,000,000원, 원고 D로부터 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56,795,300원, 원고 B에게 17,400,000원, 원고 C에게 3,700,000원, 원고 D에게 3,6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피고 E은 2022. 5. 6.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이던 피고 F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74,204,700원(231,000,000원 - 56,795,300원), 원고 B에게 132,600,000원(150,000,000원 - 17,400,000원), 원고 C에게 26,300,000원(30,000,000원 - 3,700,000원), 원고 D에게 26,400,000원(30,000,000원 - 3,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7. 5.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F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F 명의 등기의 원인

살피건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 또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5. 6. 피고 E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임이 추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사이에 ‘협의 이혼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2022. 2.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일시에 작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 E이 2022년 3월 및 4월경 원고들에게 보낸 문자내역을 통해 보면 2022. 2. 3.경 피고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22. 5. 9.에서야 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하였던 점, 피고 E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굳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어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닌 협의이혼에 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F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E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 이전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F은 피고 E에게 사해행위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별지